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46
----------	----

발의년월일 : 2010. 10. 4.

제안자 : 박승희 · 박순남 · 이용범 의원
(찬성자 20인)

□ 제안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나.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 다.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4조(생산품 구매) - 제45조(생산품 인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생산품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 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수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애인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제28조 관련)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 파일, 책 표지)	100분의 5 이상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증질지, 감열지)	100분의 5 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 부속물(넥타이, 손수건)	100분의 20 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100분의 20 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100분의 5 이상
8. 가구류	100분의 5 이상
9. 전자·정보 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0분의 5 이상
10.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00분의 5 이상
11.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00분의 5 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	100분의 5 이상
13. 현수막	100분의 5 이상
14. 종이컵	100분의 5 이상
15. 상자(마분지 및 골판지 상자)	100분의 5 이상
16. 신발류	100분의 5 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 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100분의 5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 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 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 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5.21>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시행일 : 2011.1.1] 제10조제2항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